

최신 판례 예규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기준법무기본-93, 2023.03.07

질 의

- 손익귀속시기 임의 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2023.03.07)

○ (사실관계) A법인이 회계분식 목적으로 '11~'15사업연도의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이연하여 '16~'20사업연도의 손실로 허위계상한 것에 대하여,

-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여 '16~'20사업연도 처분손실을 부인함
- A법인은 상기 과세관청의 경정을 후발적 사유로 하여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11~'15사업연도에 누락한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함

○ (질의)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제1안)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제2안)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함

○ 해당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전법규재산-922, 2022.12.06

질 의

- 농업을 경영하던 피상속인이 '22.3월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영농상속을 받고 영농에 계속 종사함
-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에 개인영농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법인전환함(법인전환 전까지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
 - * 상속세및증여세법 18②(2) 및 상증령 16에 따른 영농상속의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

질의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3개월 전에 개인영농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상증령 16②(2)가 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농으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하면서 국내 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사업장 축소 완료하거나 기존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세액감면 적용됨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정책과-1195, 2023.05.23

■ 질 의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여부 등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에 따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0항에 따른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2호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지급한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192, 2023.04.10

■ 질 의

- 코로나19 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환자를 수용한 일반 의료기관이 부족한 병상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회복기 환자를 전원 전실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이하 "쟁점보상금") 병상 회전을 제고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쟁점보상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지급한 코로나19병상 효율화인센티브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